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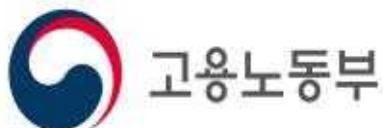
# **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(직업훈련기관용)**

---

- 1판 -

2021. 12. 09.

본 지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정에 따라  
지속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직업능력정책국  
인적자원개발과



## 목 차



1. 직업훈련기관 방역 수칙 .....	1
2. 공통 방역 수칙 .....	3
3. 개인 방역 수칙 .....	5

### <불임>

불임 1.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(예시) .....	6
불임 2.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내용(중앙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) .....	7
불임 3. 식당카페 방역 수칙 .....	8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의무적 용	<p><b>① 방역수칙 게시·안내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*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방역수칙 준수</li> </ul>
	<p><b>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모든 출입자로부터*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접종완료자) 전자증명서(Cov, QR), 종이증명서**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, 완치자</li> <li>- (미완료자, 예외자)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PCR음성확인자: 문자통지서,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</li> <li>2) 예외자***: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,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</li> </ol> </li> </ul> </li> <li>◦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관리자·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</li> <li>**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</li> <li>*** 18세 이하인 자(2022.2.1.부터는 0~11세 이하인 자)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접종완료 및 음성/예외 등 확인 협조</li> </ul>
	<p><b>③ 출입자 명부 관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**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포함, 공무상 출입인 경우,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</li> <li>**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,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</li> <li>*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</li> </ul>	
	<p><b>※ 계도기간(2021.12.6.~12.12.) 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</b></p>	
	<p><b>④ 마스크 착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</li> </ul>
<p>* 음식물 섭취 시 예외</p>		
<p><b>⑤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</b></p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방역관리자 지정</li> <li>◦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권고)</li> </ul>		
<p><b>⑥ 기숙시설 운영</b></p>		
<p>▲ 기숙시설 운영금지, 단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</p>		
<p><b>&lt;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&gt;</b></p>		
<p>① 입소자 (공통)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,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- (입소前) 10일간 예방격리 권고(접종완료자, 2일 이내 PCR음성확인자 예외), 2일 이내</p>	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<p>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(접종완료자 예외) 결과 입소 시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입소後)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: 기숙사 밀도 조정(1인실 권고),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·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, 층간 이동 자제, 공용 공간(샤워실·화장실 등) 소독 강화</li> <li>-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</li> </ul> <p>② 종사자 (공통) 입소자와 동선 분리, 매일 발열체크,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(접종완료자 예외)</p> <p>③ 방문자 :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</p>	
권고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(환기)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</li> <li>◦ (소독) 일 1회 이상 소독(공용물품, 손잡이, 난간 등)</li> <li>◦ (시설 내 거리두기) 시설 내 2m(최소 1m)</li> <li>◦ (관악기·노래연기) 마이크 덮개 사용, 연주 노래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</li> <li>◦ (춤출 때)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유지</li> <li>◦ (착석) 한방향으로 좌석 배치</li> <li>◦ (공용시설)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권고사항 준수</li> </ul>

< 시설 공통 방역수칙 > \* 모든 시설에 공통 적용하나, 시설별 수칙을 우선하여 적용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<p><b>① 방역수칙 준수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</li> <li>-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방역수칙 준수</li> </ul>
	<p><b>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</li> </ul>
	<p><b>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</li> <li>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승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</li> <li>**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</li> <li>**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
	<p><b>④ 마스크 착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</li> </ul>
	<p><b>⑤ 음식섭취 금지(일부 시설 미적용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</li> <li>*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음식물 섭취 금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</li> </ul> </li> </ul>
	<p><b>⑥ 손씻기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, 손씻기</li> </ul> </li> </ul>
	<p><b>⑦ 밀집도 완화(시설별 기준 적용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면적/수용인원 등 시설별 기준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이용자 간 거리두기 2m(최소1m) 이상 준수(권고)</li> </ul>
	<p><b>⑧ 환기하기(시설별 차등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기시간 게시(권고)</li> </ul> </li> <li>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</li> </ul>	
	<p><b>⑨ 소독하기(시설별 차등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일 1회 이상 소독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</li> </ul> </li> </ul>	
	<p><b>⑩ 기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방역관리자 지정</li> <li>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</li> </ul>	

## <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>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흡연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사람 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</li> <li>▲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</li> <li>▲ 대화 금지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</li> <li>▲ 흡연실 내 대화 금지</li> </ul>
화장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</li> <li>▲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</li> <li>▲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</li> <li>▲ 사용 전/후 손씻기</li> </ul>
탈의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</li> <li>▲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</li> <li>▲ 손소독제 배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</li> <li>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</li> <li>▲ 공용물품 만진 후,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</li> </ul>
샤워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</li> <li>▲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</li> <li>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</li> <li>▲ 공용물품* 배치 자체</li> </ul> <p>*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</li> <li>▲ 기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</li> <li>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</li> <li>▲ 기급적 개인 물품 지참</li> </ul>
휴게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</li> <li>▲ 대화 자체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</li> <li>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</li> <li>▲ 대화 자체</li> </ul>
탕비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동시 이용은 기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</li> <li>▲ 동시 이용은 기급적 2명으로 하기</li> </ul>
민원 창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</li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</li> <li>▲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</li> </ul>

### 3 개인 방역 수칙

#### □ 개인방역 5대수칙

-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, 2m(최소 1m) 거리 두기
- 아프면 검사받고,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
- 30초 손 씻기, 기침은 옷소매에
-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, 주기적 소독
- 직장동료,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

#### □ 상황별 주요 수칙

##### (1) 일할 때

-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,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
- 재택근무, 유연근무,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·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
-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, 음식 섭취 자제
-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

##### (2) 식사할 때

- 식사는 짧게, 대화 자제,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
-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, 한 칸 띄어 앉기
- 혼잡한 식당 피하고, 포장·배달 활용하기, 개인 접시 덜어 먹기

##### (3) 운동할 때

-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,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, 2m(최소1m) 거리 두기
- 개인 물품 사용 (개인 컵, 매트 등), 탈의실 등 공용공간 피하기
- 운동 전·후 모임, 음식 섭취하지 않기
-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,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격렬한 운동 자제하기

##### (4) 공동 생활할 때

- 가급적 1인 1실 사용하고, 침대 간 2m(최소 1m) 거리 두기 유지
-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,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
-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
-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, 아프면 검사받기

## 붙임1

###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(예시)

\* 발열(37.5°C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이 있는 자

훈련생 수강 또는 임·직원 근무중

증상(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등)이 나타난 경우



즉시 해당자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



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,  
지역번호+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상담



훈련기관 내 전체 훈련생, 임·직원 개인위생 관리(마스크 착용 등) 및  
상호접촉 자제



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 
해당 훈련생 등 격리, 역학조사, 소독, 코로나19 검사 등 적극 이행  
(보건당국의 특별한 조치 사항이 없다면 해당 훈련생 등 즉시 귀가)

### [의심 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경우]

\*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당국의 조치(격리 등)에 따름

검사 결과: 음성인 경우



일상 복귀

검사 결과: 양성(확진)인 경우



❶ 보건당국의 조치 사항(입원, 격리 등)에  
협조·지원

❷ 훈련기관 내 상황 전파  
(협력업체, 용역업체, 방문자 등 포함)

❸ 확진 환자와 접촉한 훈련생, 임·직원에 전파

※ 코로나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### 〈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〉

#### ○ 법적근거,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

- (법적근거) 감염병예방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, 제83조(과태료)
- (행정명령기간)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“경계·심각”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(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- (과태료 부과) 계도기간 1개월('20.10.13.~'20.11.12.)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
※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,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
- (과태료 금액)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,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

#### ○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·대상

- (착용 의무)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
**마스크 착용**  
\*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- (관리 의무)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**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** 의무 (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)

#### ○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

- (마스크 종류) 식약처에서 ‘의약외품’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, 그 외 천·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 가능  
\*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
- (착용법)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
\*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

#### ○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

예외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</li> <li>•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</li> <li>•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</li> </ul>
예외 상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※ 단, 실외에서도 집회·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·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 없이 마스크 착용</li> <li>• 집,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</li> <li>•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</li> <li>•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</li> <li>•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</li> <li>•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</li> <li>•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</li> <li>•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</li> <li>•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) 최소한으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</li> <li>•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</li> <li>•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</li> <li>•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(예: 항공기 조종사 등)</li> <li>• 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)을 위해 필요한 경우</li> </ul>

### 붙임3

### 식당·카페 방역수칙

#### < 직업훈련기관 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 방역수칙 >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의무적 용	<b>① 방역수칙 게시·안내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*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</li></ul>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방역수칙 준수</li></ul>
	<b>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모든 출입자로부터*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(접종완료자) 전자증명서(Cov, QR), 종이증명서**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, 완치자</li><li>- (미완료자, 예외자)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) PCR음성확인자: 문자통지서,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</li><li>2) 예외자***: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,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</li></ol></li><li>◦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</li></ul>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접종완료 및 음성/예외 등 확인 협조</li></ul>
	<p>* 관리자·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</p> <p>**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</p> <p>*** 18세 이하인 자(2022.2.1.부터는 0~11세 이하인 자)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※ 위 1), 2)가 아닌 미접종자는 1인 이용 가능(단, 사적 모임 제한 내에서 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가능)</p>	
	<b>③ 출입자 명부 관리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** 확인 및 안내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</li></ul>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** ※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</li></ul>
	<p>*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포함, 공무상 출입인 경우,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</p> <p>**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,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</p> <p>*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</p> <p>※ 계도기간(2021.12.6.~12.12.) 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</p>	
	<b>④ 마스크 착용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</li></ul>
	<p>* 음식물 섭취 시 예외</p>	
	<b>⑤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방역관리자 지정</li><li>◦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권고)</li></ul>	-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<p><b>⑥ 추가적용 수칙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</li> <li>◦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</li> <li>◦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</li> <li>◦ 테이블 간 이동 금지</li> </ul>
권고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(환기)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</li> <li>◦ (소독) 일 1회 이상 소독(공용물품, 손잡이, 난간 등)</li> <li>◦ (시설 내 거리두기) 시설 내 2m(최소 1m)</li> <li>◦ (공용집게 사용 등)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</li> <li>◦ (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) 주사위 카드, 게임기계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</li> <li>◦ (공용시설)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권고사항 준수</li> </ul>